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8. 4. 17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연동열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(안 제1조~제2조)
-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(안 제3조)

-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, 피해수습지원 등의 지원기준(안 제4조)
- O 중복지원 금지(안 제5조)
-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(안 제6조)
-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(안 제7조)
- 재난피해자에 대한 자금지급 방법 및 화수(안 제8조~제9조)
- 재원의 확보(제10조)
- 그 밖의 주요사항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○ 본 조례안은 2017.1.17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,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O 주요 조례안 내용은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지원이 다른 법령이 나 조례와 중복지원을 금지하였고
-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에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자금지원 방법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규정하였고
-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
- 최근 화재·붕괴·폭발 등 크고 작은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로

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난피해 수습 및 복구, 생계지원 등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및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 위임 규정인 사회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 재난 피해 복구 및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「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재원 확보(예산 또는 기금)방 안 및 국,시비 지원 여부, 생활안정지원의 구체적인(지원항목 및 지원액 결정) 내 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61 호

제출연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4항에 따라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(안 제2조)
 -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함
- 나.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 - 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음
- 다.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 -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
- 라. 중복지원 금지 규정 및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 절차 규정 (안 제5조~ 제6조)
- 마.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

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2.14. ~ 3.6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(이하 "사회재난"이라 한다) 중 법 제60 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지원 결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·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구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.
 -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 (資力)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2.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차 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3.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

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·재정적 능력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4조(지원 기준)**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 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"이라 한다)
 - 2.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(이하 "간접지원"이라 한다)
 - 3.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"피해수습지원"이라 한다)
 - 4. 그 밖에 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제5조(중복지원 금지)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**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**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(이하 "생활안정 지원 등"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 -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

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
- 2.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、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、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、실종、부상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、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 다.
-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**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 - 1. 중앙행정기관
 - 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
 - 3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 - 4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 - 5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
 - 6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、축산업협동조합,「수산업협동조합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,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
 - 7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 - 8.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

- 제8조(지급 방법)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)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- 제9조(환수)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재원의 확보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,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,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회재난 피해신고서

※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 전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가 1. **신고인 정보** * 피해자와의 관계 [] 본인 [] 부모 [] 형제 [] 기타(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2. 피해자 정보 ※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 성명 생년월일 주소 []KT []SKT 성명: 휴대전화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[]LGU+ []기타 생년월일: 여락처 성명: 유선전화)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생년월일: 세대주 여부 [] 세대주, [] 세대원 가족 수 명 (본인 포함 세대원) 고등학생 수) 고등학교 [비전문계 / 전문계] (명 여 [] , 부 [] 가입자명: 도시가스 사용 여부 생년월일: 계좌번호 은행명: 계좌번호: 예금주: 3.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[] 사망・실종, [] 부상(부상 정도: , 치료기관명: 신고 인명 [] 사업피해(휴업 [] / 폐업 [] / 실직 []) 피해), [] 사업피해(휴업[]/폐업[]/실직[]) 확정 [] 사망・실종, [] 부상(부상 정도: 시설명 (2) (3) (4) 총면적(소유+임차) (2) (3) **(4**) 면허ㆍ허가ㆍ (3) (1) (2) **(4**) 등록 번호 시설 피해 신고 (2) (3) **(4**) 피해 물량 확정 (2) **(4**) (1) (3) 피해 구분 (2) (3) **(4**) (1) **(4)** 피해 원인 (2) (1) (3) 융자신청 여부 [] [] [] [] 4.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[] , 부 [] 내용: 타 시・군・구 여 [] , 부 [] 내용: 피해신고 여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개인정보 수집 • 이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등 제3자 제공 • 활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으면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1.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.
- 2.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(경미한 부상, 중상해 등)을 적되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.
- 3.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/매몰/전파/반파/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
- 4.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.

처 리 절 차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